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 박용진 · 이소영 · 정성호

박 정・천준호・이학영

정춘숙 • 전용기 • 송옥주

민병덕 • 기동민 • 용혜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 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조
	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
	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
	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
	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
	<u>다.</u>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
	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
	<u>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u>
	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
	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